

『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8월 31일

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소사업소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수도법」에 따라 위원회명칭과 위원회 기능 개정
 -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⇒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
 - 위원회의 기능
 -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
 -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
 -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○ 근거법조항 변경

- 수도법 제19조의 2규정 ⇒ 「수도법」 제30조

○ 위원 수 확대

- 9인 이내 ⇒ 15명 이내

○ 간사

- 시장이 임명 ⇒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장

라. 참고사항

○ 수도법 제30조

○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(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를 「수도법」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본 위원회를 활성화 하기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